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3. 3. 9 선고 2021가단61618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B

피 고 C

변 론 종 결 2023. 1. 12.

판 결 선 고 2023. 3. 9.

주 문

1. 피고와 D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20. 1. 31. 체결된 증여계약을 17,123,384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17,123,384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주문 제1항 및 피고는 원고에게 17,123,384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접수일부터 소장 부분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일부 기각하는 부분

사해행위취소로 인한 가액배상 지급의무는 그 전제가 되는 사해행위취소라는 형성판결이 확정될 때 비로소 발생하므로,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는 지체책임을 물을 수 없어 판결 확정일까지의 지연손해금은 인정되지 않는다. 또한 사해행위취소로 인한 가액배상청구는 장래의 이행을 구하는 것이므로 판결 확정일 이후의 지연손해금의 산정은 민법에서 정한 법정이율에 의하여야 한다. 따라서 원고의 지연손해금 청구 중 판결 확정일까지의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과 판결 확정일 이후 연 5%의 범위를 벗어나는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사 문현정

[별지목록]

부동산의 표시

1. 경상남도 창원군
답 575㎡
 2. 경상남도 창원군
답 671㎡
 3. 경상남도 창원군
[도로명주소] 경상남도 창원군
위 지상
조적조(벽돌) 스라브지붕 단층
단독주택 01
(4.14㎡)
87.45㎡
- 끝.

청 구 원 인

1. 당사자 관계

가. 원고 A 주식회사(이하 '원고'라고 합니다.)는 금융감독위원회의 인가를 독하여 할부금융대출, 일반대출, 리스(시설대여) 등을 취급하는 여신전문종합금융 법인이며 소외 E 주식회사로부터 소외 D의 대출 채권을 매수한 채권자입니다.

나. 또한 피고 C은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2020.01.31. 증여계약에 의하여 2020.02.03.자로 명의이전등록을 마친 수익자입니다.

2. 피보전 채권의 존재

(1) 계약내용

가. 소외 D는 E 주식회사로부터 2019.06.20.자에 여신거래계약을 체결하여, 금원을 차용하면서 여신거래 계약 및 여신거래기본약관 등을 준수하여 관련 채무를 이행하기로 약정하였습니다.

나. 또한 소외 D는 여신거래기본약관에 해당하는 기한이익이 상실사유가 발생할 경우, 기한이익 상실 후, 잔존원금 및 관련된 모든 채무에 대하여 연 13.10%를 적용한 지연배상금을 합산하여 일시에 상환하기로 약정 하였습니다.

다. 이후 지속적으로 E 주식회사의 채권이 회수되지 않아 이 사건 채무를 원고회사에 매각하여 2020.06.25.자로 채권양도통지서를 발송하였습니다.

(2) 소외 D에 대한 피보전 채권 내역 (2021.07.26. 현재)

대출금 (청구내역표 참조)

원금	이자	지연배상금	송무비	합계
16,723,493	393,023	6,868	0	17,123,384

청구금액 (송무비 제외) 17,123,384원

(3) 피보전 채권의 선재성

1) 이 사건 소외 D의 채무는 2019.06.20.자에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별지목록 부동산의 중여계약일자는 2020.01.31.이며, 명의이전 등기는 2020.02.03.자로 접수, 경료됨에 따라 원고회사의 채권은 중여계약이전부터 존재하는 채권으로 피보전채권이 된다 할 것입니다.

2) 판례에 의하면,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할 것인데,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는 당사자 사이의 약정에 의한 법률관계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고, 채권성립의 개연성이 있는 준법률관계나 사실관계 등을 널리 포함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2. 11. 8. 선고 2002다42957 판결)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3. 피고와 소외 D (채무자)의 무자력과 사해행위

(1) 소외 D의 무자력 상태

가. 소외 D는 E 주식회사와 2019.06.20.자로 대출거래계약을 체결하여 대출금 채무가 존재함을 잘 알고 있는 상태에서 2020.01.31. 친족관계로 추정되는 피고에게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의 명의이전 등록을 경료 하였습니다.

나. 자신이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빠진 것을 알고 있던 소외 D는 E 주식회사에 대한 위 잔여대출금 전액을 일시에 상환하지 못하게 될 처지에 이르자, 위 계약에 기하여 발생되는 채권자의 법적조치를 면탈하고자 2020.01.31.자로 자신의 별지목록 기재의 부동산을 피고에게 증여를 통하여 명의이전 하였습니다.

다. 소외 D는 위 부동산을 타인에게 명의이전하게 된다면 원고의 위 채권회수가 불가능하게 된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는 상태에서 위 채무를 면탈하고자 명의이전 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라.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친족관계로 추정되는 피고에게 명의이전등록을 함으로써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를 감소케 한 것은 원고의 채권만족을 방해한 것으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할 수 있습니다.

4. 원고의 가액배상 청구이유

원고는 피고를 채무자로하여 별지기재목록 부동산을 공동담보로 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소외 D에 대해 원금 반환이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부득이 가액배상을 청구하며, 그 가액배상의 범위는 원고의 청구채권액(원금) 소장 작성일 2021.07.26.자 기준 17,123,384원의 한도 내에서 그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5. 맺음말

소외 D와 피고 사이의 본 건 목적물 부동산의 명의이전등록 행위는 원고의 채무를 면탈하기 위함이 분명하다고 사료되며, 원고의 채권을 침해하는 사해행위라 할 것이므로 마땅히 취소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에 원고는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의 명의이전 등록행위에 대하여 위와 같은 이유로 채권의 범위 내에서 그 가액을 청구하는 판결을 구합니다.

